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58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용혜인 · 윤종오 · 이주희
손 술 · 김남희 · 전종덕
정혜경 · 서미화 · 이수진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으며,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응 수단도 현행법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전체적인 규율 체계를 집회·시위의 억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제명을 포함 현행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하고, 법의 목적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개정된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 등 치안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안 제명 수정).

나.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함.

다. 법의 목적을 적법 집회의 보호와 위법 집회의 방지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장으로 전환함(안 제1조 수정).

라.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을 도입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각 호 수정).

바.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사.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근거 규정을 없애고 제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수정).

아. 학문 등 집회에 대한 현행법 규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자. 당국에 질서유지인 명단 등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차.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집회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 삭제).

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수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를 “집회(集會)의 자유를”로,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집회나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집회 및 시위를”을 “집회를”로,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집회 및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집회 또는 시위가”를 “집회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집회나 시위에”를 “집회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집회 및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회나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집회 또는 시위”를 각각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옥외집회 및 시위의”를 “옥외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집회나 시위를”을 각각 “옥외집회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시위 장소가”를 “장소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위의”를 “행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을 “옥외집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집회나 시위가”를 “집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집회 또는 시위를”을 각각 “집회를”로 한다.

②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100명 이하의 사람이 차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2.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를 “옥외집회가”로,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집회 또는 시위가”를 “집회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를 “제한되는 집회라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또는 시위 간에”를 “간에”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를 “옥외집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를 “옥외집회에”로,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를 “옥외집회가”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을 “옥외집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집회나 시위의”를 각각 “집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집회나 시위로”를 “집회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집회 또는 시위로”를 각각 “집회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집회 및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집회 또는 시위를”을 각각 “집회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집회 및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각각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또는 시위 질서가”를 “질서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집회나 시위의”를 “집회의”로,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질서유지인의 명단 등 개인정보는 집회 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집회나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나 시위에”를 “집회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각각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나 시위의”를 “집회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집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집회 또는 시위”를

각각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회 또는 시위가”를 “집회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집회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회 및 시위의”를 “집회의”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집회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집회 또는 시위의”를 “집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또는 시위 업무의”를 “업무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을 “제5조제1항을”로,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을 “제16조제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호 중 “집회 또는 시위에”를 “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회 또는 시위를”을 “집회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에”를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4항에”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를 “옥외집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u>	<u>집회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집회(集會)의 자유를</u> ----- ----- <u>집회의</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u>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u>	3. ----- ----- <u>집회</u> ----- <u>를</u> -----

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생략)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
-----집회
의-----

-----.

4. -----
-----집회의-

-----.

5. -----

-----집회를-----

-----집회의-

-----.

6. (현행과 같음)

제3조(집회에 대한 방해 금지) ①

-----집
회를-----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

-----.

② -----
-----집회의-----

-----.

③ 집회의-----
-----집회가-----

-----.

-----.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의-----

-----집회에-----
-----.

-----.

제5조(집회의 금지) ① -----

-----집회를-----

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
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
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
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
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
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
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
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
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

-----.

1. -----

-----집회

2. -----

-----집회

② -----

-----집회를-----

-----.

제6조(옥외집회의 신고 등) ① 옥
외집회를-----

-----옥외집회를-----

-----.

장소가-----

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

1. ~ 5. (현행과 같음)

6. 행진의-----

②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100명 이하의 사람이 차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2.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옥외집회를-----

-----.

⑤ -----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회가

⑥

집회
를

집회
를

집회를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옥외집회
가

집회를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

-----집회
에-----

-----.

<삭 제>

<삭 제>

3. -----제한되는 집
회라고-----

② -----집회의

-----간에----

-----옥외집회가-----

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

-----.

③ -----

-----옥외집회
에-----
-----집회의-----
-----.

④ -----
옥외집회가-----

-----옥외집회를-----

-----.

⑤ -----

-----집
회의-----
-----, -----집회
의-----
-----.

1. -----

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
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
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
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
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
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
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

-----집회로-----

2. -----

-----집회로-----

3. -----

-----집회로-----

⑥ 집회의-----

-----.

제9조(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의-----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집회를-----
-----.

-----집회를-----

-----집회를-----
-----.

<삭 제>

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

-----집회에-----

-----인정하면-----

-----.

<삭 제>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

-----집회의-----

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의-----

-----.

② -----집회의

-----.

<삭 제>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의-----집회에-----
-----.

<삭 제>

③ 집회의-----

-----집회의-----

--.

④ 집회의-----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 -----
-----질서가-----

--.

② · ③ (생략)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집회의

-----.

⑤ 집회의-----

-----집회를-----

-----.

⑥ 질서유지인의 명단 등 개인
정보는 집회 종료 즉시 파기하
여야 한다.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에-----

-----.

② 집회에-----

-----.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 -----
--집회의-----
-----집회의-----

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

-----.

-----.

② 집회의-----

-----.

제20조(집회의 해산) ① -----

-----집
회에-----

-----.

1. 제5조제1항을-----
-----집회

<삭 제>

<삭 제>

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
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
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
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
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
-----집회

5. -----
-----집회

② 집회가-----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집회자문위원회) ① 집회
의-----

-----집회자문위원회-----

-----.

1. -----집회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u>	3. <u>집회에</u> ----- -----
4. <u>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4. ---- <u>업무의</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생 략)	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제5조제1항을</u> ----- ----- ----- <u>집회를</u> ----- ----- -----.
③ <u>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u>제16조제4항을</u> ----- ----- ----- -----.
④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u>집회 또는 시위에</u>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 ----- <u>집회에</u> ----- ----- -----.
제23조(벌칙) <u>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삭 제>

<u>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u> <u>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u> <u>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u> <u>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u> <u>금·구류 또는 과료</u> <u>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u> <u>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u> <u>류 또는 과료</u>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 는데도 그 <u>집회 또는 시위에</u>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u>집회 또는 시</u> <u>위를 개최한 자</u> 3. ~ 5. (생략) <u>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u> <u>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u> <u>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u> <u>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u> <u>주최자로 본다.</u>	제24조(벌칙) ----- ----- ----- ----- -----. 1. ----- ----- -----<u>집회에</u>----- ----- 2. ----- -----<u>집회를</u>----- ----- 3.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4항에----
 -----옥외집
회의-----

 -----.

②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
 한 집회의 주최자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